

사단법인 의령 입산역사문화 마을 발전 연구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의령 입산역사문화 마을 발전 연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2024.7.28. 변경>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남 의령군 부림면 입산로2길 61에 둔다.<2024.7.28. 변경>

제3조(목적) 본회는

입산역사문화의 세계화를 지향하며 국가문화 정책과 연계하면서, 지역문화 및 문중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수준과 의식 함양을 도모하며,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로 문화를 융·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문화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하는데 있다.

<2024.7.28. 변경><2026.5.30. 변경>

제4조의1(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재의 수집·발굴·보존 및 전승 사업 육성
2. 후손과 지역주민의 문화수준과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과 장학사업.
3. 문화의 부가가치 창출로 자립의 기반으로 구축하고 지역간 관광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4.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문화단체의 교류 및 국제 협력사업 확대.
5. 선조의 유무형 유산관리, 발전, 추모행사 등의 추진
6. 백산 안희제 선생 관련 기념사업 및 관련 시설물 위탁관리.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2024.7.28. 변경>

제4조의2(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혜택은 수혜자의 출생지, 근무지,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2026.5.30. 추가>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본회 제1조에 명시된 후손.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임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이 사 : 9명이내(회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 1명이내<2024.7.28. 변경><2026.5.30. 변경>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단, 회장은 제외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완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2024.7.28. 변경>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24.7.28. 변경>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총회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수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2026.5.30. 변경>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제적회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만, 회장직을 맡은 이사가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 회장직은 당연 상실된다.)

2.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기본재산의 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사업계획의 승인

6.기타 중요사항

<2024.7.28. 변경>

제22조(총회의결 제적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하며,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회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제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회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2024.7.28. 변경>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1.기본재산은 흔히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한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한다.

<2026.5.30. 변경>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기부금모금액 등) 각종 기부금의 경우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2026.5.30.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제28조의 2024.7.28. 변경 정관은 경상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③ 제3조, 제4조의 2, 제10조, 제17조, 제38조②, 제41의 2026.5.30. 추가 변경 정관은 경상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